

# **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**

**노원민들레재가복지센터**

## -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 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)

마.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.

[등급별 월 한도액]

| 구 분   |     | 금 액(원)  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월 한도액 | 1등급 | 1,885,000원 |
|       | 2등급 | 1,690,000원 |
|       | 3등급 | 1,417,200원 |
|       | 4등급 | 1,306,200원 |
|       | 5등급 | 1,121,100원 |

[방문요양]

| 구 분  |         | (방문당) 금 액(원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방문요양 | 30분 이상  | 16,190원      |
|      | 60분 이상  | 23,480원      |
|      | 90분 이상  | 31,650원      |
|      | 120분 이상 | 40,280원      |
|      | 150분 이상 | 46,970원      |
|      | 180분 이상 | 52,880원      |
|      | 210분 이상 | 58,930원      |
|      | 240분 이상 | 65,000원      |

[방문목욕]

| 구 분  |            | (방문당) 금 액(원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방문목욕 | 목욕차량(차량)이용 | 82,160원      |
|      | 목욕차량(가정)이용 | 74,070원      |
|      | 목욕차량 미이용   | 46,250원      |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,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, 배상의 의무
- 바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가)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다)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
라)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사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아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**-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**

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‘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’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나. 서비스 제공 절차.

- (1)신청 접수 :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,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.
- (2)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: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,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.
- (3)서비스제공계획 :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욕구사정기록지, 위함도평가도구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.
- (4)서비스 계약체결 :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.
- (5)서비스 제공계획 통보: 센터는 대상자(보호자)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, 공단에 서비스 계약내역을 통보한다.
- (6)서비스 제공 :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(보호자)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서비스 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(보호자)에게 통보한다. 센터는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 한다.
- (7)방문상담관리 : 센터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.
- (8)급여비용명세서 발부 : 기관은 수급자(보호자)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.

#### -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가. 서비스의 내용 : 신체활동 지원(세면, 목욕, 신사도움, 체위변경 등), 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 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(취사, 청소, 세탁 등)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1)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- 2) 방문목욕 :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나. 서비스의 세부사항

##### (1) 신체활동 지원

-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,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

##### (2) 일상생활(가사)지원서비스

-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장보기 등

##### (3) 개인 활동 지원

- 외출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동행, 각종 정보안내, 은행 및 관공서,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

(4) 정서지원

-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
(5) 치매관리 지원

- 행동변화 대처, 프로그램 진행

(6)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

-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.
-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.

(7) 방문목욕

- 가정방문 방문목욕

다.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, 기타 비 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

-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

가.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

- (1)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,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- (2)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,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.

나. 병원진료

- (1)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(2)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,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-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에 관한사항

가.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나.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,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, 사망 시,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